

예외부부

92

25

계
전
조
결
의
규
정
함
호
정
장
전
결
사
항

기안자	사회과 강경준	전화번호	206	공보	필	요	불필	요
주요계장	사회과장	보사	국장	제2부	시장			
협조자	사회계 제1계 법제계 공제계	제1부	제1부	제1부	제1부	제1부	제1부	제1부
서명	사회계 제1계 법제계 공제계	내무국장	내무국장	내무국장	내무국장	내무국장	내무국장	내무국장
기안월일	66.4.2	66.4.2	66.4.2	66.4.2	66.4.2	66.4.2	66.4.2	66.4.2
분류기호	가661	가661	가661	가661	가661	가661	가661	가661
문서번호	가661	가661	가661	가661	가661	가661	가661	가661
경수참	유신조	유신조	유신조	유신조	유신조	유신조	유신조	유신조
제 목	서울특별시립후생사업운영요금 개정							

(제1안)

우선, 내부결재
 제 목, 서울특별시립후생사업운영요금
 서울특별시립후생사업설치소제 4조의 규정에 의거 등사업운영에 관한
 한 사업후생사업운영요금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정한 시장방침에 의
 하여 결재 상시하고 있으나 정차가져 12
 방 6원을 8원으로 인상하고자 등
 장을 변경함과같이 변경설정 운영코
 지 제정을 바랍니

법
제
이
과
4.9
25

4.9
25 8

1209

서울특별시

63P

1. 1966. 5. 1부터 시행한다

(제2호)

우선 우선처 참조 배신 시장
제 목 등 건

서울특별시립후생사업소치조제 제
4조의 목적에 의거 시립후생사업운영
규정을 개정운영하고 있는바 중반 시
정방침에 따라 운영규정을 개정
과 같이 ~~개정~~ 실시케 하였으니 통사
운영에 차관 없도록 할 것

1. 1966. 5. 1부터 시행할 것

유첨: 시립후생사업운영규정 1부 끝.

우선처

서칭 4-9, 서사 22, 23



收入預算增額			備考
項	細項	目	增加額
雜收入	雜收入		1,519,000
		港幣收入	1,519,000
			1,519,000
計			1,519,000

1기 증액
 $2 \times 3,100 \times 245 = 1,519,000$

1211

4-2 600

시립후생식당운영요강



1. 목적 영세부동근로자와 국민영세민으로 하여금 염가로 주식 (국수 1기식)을 제공하여 이들의 자활향상 및 생활안정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운영방법

가. 본식당은 구청장 및 시립사업소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나. 본식당은 매일 10시에 개장한다

다. (1) 남대문식당 급식인원은 매일 500명으로 정한다

(2) 성동(성수동.신당동)마포식당 급식인원은 매일 400명으로 정한다.

(3) 성북.서대문(북아현동.홍은동)식당 급식인원은 매일 200명으로

정한다.

(4) 용산.영등포식당 급식인원은 매일 300명으로 정한다.

라. 식사는 1인 1식 소매편(간편) 300그램으로 한다.

마. 부식비는 1인 1식 3원으로 한다

바. 매식자로부터 징수하는 가격은 1기당 8원으로 한다.

사. 식사에 필요한 주부식 및 기타 운영비는 시가 부담으로 한다.

3. 시대 징수방법

가. 식당운영에서 징수한 대금은 당일 17시까지 별지 서식의 남부서에 의하여 시금고에 불입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는 이를 연장할수 있다

나. 공유일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운영비 경리

가. 주식용 양곡(소매편)은 시에서 일괄구입 배정하고 부식비 및 기타 운영비는 구청장에게 영달 경리케한다.

나. 식당운영 및 시대 징수를 위하여 식당 책임직원을 정규직원으로 지정하여 임명케한다. 19124-3

6

Handwritten signature or initials at the bottom right.

~~SECRET~~

다. 식당 담당 직원은 식당 운영사항을 구청장에게 일보로서 보고하고 구청장은 10일감시의 순보로 운영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한다.

5. 종사원(고용원) 사용

가. 성동(성수동, 신당동). 마포 식당은 종사원 각 5명중 조리사 각 1명, 취사부 각 4명으로 하되 남자 각 2명, 여자 각 3명으로 한다.

나. 상복, 시대문(북아현동, 종은동) 식당은 종사원 각 3명중 조리사 1명, 취사부 각 2명으로 하되 남자 각 1명, 여자 각 2명으로 한다.

다. 기타 식당은 조리사 각 1명, 취사부 각 3명으로 하되 남자 2명, 여자 2명으로 한다.

6. 본 보고장은 1966. 5. 1부터 시행한다.

